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99호

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90-1번지 일대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6일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90-1번지 일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10,440.40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
권 태 정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내
7. 사업변경인가일 : 2018. 6. 29.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대지 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최고높이 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변경전	8,558.3	26.22	249.90	33,025.25	65.0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2층 ~ 지상22층
변경후	8,558.3	26.62	249.90	36,556.13	66.9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 ~ 지상22층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 단위:세대			비고
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	
변경전	4개동	184	39	80	65	
변경후	4개동	184	39	80	65	

10. 정비사업의 변경사유

: 단위세대, 지하주차장, 부대시설 개선으로 인한 제반도서 변경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(변경없음)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공 원	656.80	일원동대우아파트 재건축조합	
도 로	1125.30	일원동대우아파트 재건축조합	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사업과(☎02-3423-6093)에 비치 보관. 끝.